## 2024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 2	2024. 3. 26.		
건축종별	[ ○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	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				
	432번지 일원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 27,680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 일반주거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4,916,48㎡	건폐율 20.05%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36층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9동		
	최고높이 101.65m	용적률 270.43%	연면적 합계 123,101,656㎡		
	구 분	심의결과			
심의내용	○ 심의내용 자가 검 ○ 시 건축 관련 기 법령 및	○ <b>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</b>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 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*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				
	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## 2024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검단신도시 AA22블럭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		심의일자	2024. 3. 26.	
 건축종별	[○]신축, []증축, []대수선, []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인천검단3차피에프브이(주)외2		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				
	인천검단지구 AA22 BL		관련지번		
	대지면적 64,011 m²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 일반주거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8,103.86㎡		건폐율 12.66%	층수 지하 : 4층/ 지상 : 25층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0동	
	최고높이 80.8m		용적률 196.45%	연면적 합계 191,475.67 m²	
	구 분		<u>'</u> 심의결과		
심의내용	(구조분야)관련	<ul> <li>○ 지하외벽 시공시 뒷채움 흙에 의해 벽체가 캔틸레버로 형성되는 상태에 대하여 구조안정성을 확보할 것</li> <li>○ EPS 블록 설치나 지하외벽 두께를 키우는 것 중 구조설계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</li> </ul>			
	(토목분야)관련	<ul> <li>○ EPS 블럭 설치시 시공(배수시설 도면 표시, 시방서 작성) 및 유지관리 (부상,유실)방안 마련하고 실제 시공현장 참고하여 성과품에 반영할 것</li> <li>○ 앵커점용허기에 대한 문서 제출할 것</li> <li>○ 시험발파시 앵커의 긴장력 저하현상을 계측하고 관리토록 도면에 명시할 것</li> <li>○ 안내벽은 1m 이상으로 계획할 것</li> <li>○ 공장형 단독띠장의 50ton·f(축력)이상의 실적 확인할 것</li> </ul>			
	(행정)사항	<ul> <li>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</li> <li>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</li> <li>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및 구조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</li> </ul>			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 ○ 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